##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61 발의연월일: 2024. 11. 11.

발 의 자 : 남인순 · 김남근 · 임미애

김 윤 · 서미화 · 이재정

김성환 · 전진숙 · 백혜련

김영배 • 민병덕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감소와 불균형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사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인구정책을 전담할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총괄·조정이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총괄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정책을 집행하여 국민의 생애주기와 밀접하고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제5항 및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20호까지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 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을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 정책"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종전의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보건복지부

#### 14. 인구총괄부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로 하고, 제39조를 제28조로 한다.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로 하고,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인구총괄부) 인구총괄부장관은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인구총괄부장관이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인구총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라 인구총괄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은 인구총괄부령으로 본다.
-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인구총괄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 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신청·신 고 및 그 밖의 행위는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인구총괄부장관의 행 위 또는 인구총괄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4조(인사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인사청문 요청에 따라 아래 표의 왼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경우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국무위원 후보자

국무위원 후보자

(보건복지부장관)

(부총리 겸 보건복지부장관)

②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은 국무위원 후보자(인구총괄부장관)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인구총괄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인구총괄부, 인구총괄부장관, 인구총괄부장관, 인구총괄부장관, 인구총괄부정은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국무회의) ① (생 략)	제12조(국무회의) ① (현행과 같 음)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	2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	
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	
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	보건복지부장관이
<u>임하는 부총리</u> 및 제26조제1항	겸임하는 부총리
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부총리) ①・② (생 략)	제19조(부총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3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 정
<u>및 문화 정책</u> 에 관하여 국무총	<u> 책</u>
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	
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	제26조(행정각부) ①

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 다.

1. (생략)

<신 설>

2. ~ 12. (생략)

13. 보건복지부

14. ~ 19. (생략)

②・③ (생략)

<u>제28</u>조 ~ <u>제38</u>조 (생 략)

제39조(보건복지부)(생략)

<신 설>

제40조 ~ 제45조 (생 략)

-----

--.

1. (현행과 같음)

2. 보건복지부

3. ~ <u>13</u>. (현행 제2호부터 제1 2호까지와 같음)

14. 인구총괄부

15. ~ 20. (현행 제14호부터 제19호까지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u>제29조</u> ~ <u>제39조</u> (현행 제28조 부터 제38조까지와 같음)

<u>제28조</u>(보건복지부) (현행 제39조 와 같음)

제40조(인구총괄부) 인구총괄부장 관은 인구정책의 수립·총괄· 조정 및 저출생·고령화 등 인 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 를 관장한다.

<u>제41조</u> ~ <u>제46조</u> (현행 제40조 부터 제45조까지와 같음)